



[등록번호: 20120100153]  
 [최초등록일: 2012-04-06]  
 [최종등록일: 2025-02-04]

[www.manoffin.co.kr](http://www.manoffin.co.kr)

“베민트 커피”

##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미스터피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 .

(주)미스터피자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일부(석수동)

TEL: 02-596-3300

FAX: 031-8017-1106

담당부서: 영업지원팀(02-590-9579)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9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3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4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22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4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47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5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51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베민트 커피 외 3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일부(석수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1-03	2023-01-01	진형일	02-596-3300	031-8017-1106
	법인등록번호	131111-0692482	사업자등록번호	666-81-02675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진형일	베민트 커피 외 3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일부(석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형일	02-596-3300	031-8017-110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한상우	베민트 커피 외 3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일부(석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형일	02-596-3300	031-8017-110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최진한	베민트 커피 외 3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일부(석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형일	02-596-3300	031-8017-110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김지훈	베민트 커피 외 3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일부(석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형일	02-596-3300	031-8017-110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식회사 미스터피자에 프랜비	윙바스킷 *자진등록취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2호(반포동, 한양상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영	02-2030-2006	031-8017-1106
			법인등록번호	110111-7859494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식회사 디에스이엔	미스터피자 외 3 *(주)미스터피자 로 가맹사업 양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4층 2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진형일	02-596-3300	031-8017-1106
			법인등록번호	110111-1194739	사업자등록번호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분할(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하였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물적분할되어 분할회사에 가맹사업을 양도함	(주)미스터피자	미스터피자, 미피샌드, 미스터피자&떡볶이	2023-01-0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반포동, 한양상가)	임지윤, 김상욱
가맹본부가 양수도계약을 통해 가맹사업을 양수함	(주)디에이엔	베민트 커피 (구 마노핀)	2023-11-2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반포동, 한양상가)	진형일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가맹점사업자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베민트 커피”	BEMIND' 는 네덜란드어로 [베민트]로 읽히며, 1. 인기있는 2.호평받는 3.사랑받는을 뜻하는 단어로써 BEMIND' 의 뜻과 같이 "고객에게 사랑과 호평을 받는 브랜드로 마음깊이 새겨지고 싶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호	베민트 커피 OO점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2024-0006726
광고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2024-0006727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당사는 2023년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 재무상황은 확정 되는대로 변경등록할 예정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추후 변경등록 할 예정입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진형일	대표이사	2023.05.~현재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한상우	사내이사	2023.01.~현재	사내이사	CIO
최진한	사내이사	2023.01.~현재	사내이사	경영 자문
김지훈	감사	2023.01.~현재	감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미스터피자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베민트 커피” (등록번호: 20120100153) 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미스터피자	가맹사업 경영	2023. 1. ~ 현재	“미스터피자” (등록번호: 20080100375) 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미스터피자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미스터피자&떡볶이” (등록번호: 20214115) 이라는 영업표지의 ‘떡볶이’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미스터피자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미피샌드” (등록번호: 20214116) 이라는 영업표지의 ‘샌드’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미스터피자 자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3.04. 자진등록취소	“윙바스킷” (등록번호: 자진등록취소) 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디에스이엔	가맹사업 경영	2012. 4. ~ 2023. 11. *(주)미스터피자로 가맹사업 양도	“베민트 커피(구 마노핀)” (등록번호: 20120100153) 이라는 영업표지의 ‘머핀, 커피’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디에스이엔	가맹사업 경영	1996. 9. ~ 2023. 1. *(주)미스터피자로 가맹사업 양도	“미스터피자” (등록번호: 20080100375) 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디에스이엔	가맹사업 경영	2021. 11. ~ 2023. 1. *(주)미스터피자로 가맹사업 양도	“미스터피자&떡볶이” (등록번호: 20214115) 이라는 영업표지의 ‘떡볶이’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디에스이엔	가맹사업 경영	2021. 11. ~ 2023. 1. *(주)미스터피자로 가맹사업 양도	“미피샌드” (등록번호: 20214116) 이라는 영업표지의 ‘샌드’ 가맹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BEMIND COFFEE (상표권)	상품 홍보 및 대가 수수	2024.01.11 출원	출원 40-2024-0006726	(주)미스터피자	
			출원 40-2024-0006727		
 베민트 커피 (상표권)	상품 홍보 및 대가 수수	2024.01.11 출원	출원 40-2024-0006728		
			출원 40-2024-0006729		
 (상표권)	상품 홍보 및 대가 수수	2024.01.11 출원	출원 40-2024-0006730		
			출원 40-2024-0006731		

※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상징물,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  
영업표지 사용기간 : 가맹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영업표지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내로 한정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에 의하여 당사가 승인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을 오직 가맹점(매장)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당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가맹점(매장) 영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상표를 별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를 임의로 당사가 승인하지 않는 업체에 제작의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무단으로 당사의 영업표지(상표, 서비스표 등)를 이용하여 홍보, 판촉활동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당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의 계약 종료 후에는 당사와의 계약기간 중 그 사용을 허락 받은 일체의 영업표지 및 위 영업표지가 찍힌 각종 간판, 인쇄물(전단지, 판촉물 등) 등의 사용 및 배포를 즉시 중단·철거·폐기해야 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및 독점적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소멸할 경우, 당사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해결·처리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가맹사업 운영에 장애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본 조 제9항의 영업표지 및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을 본사의 경영적 판단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 및 허용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야 하고,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상용할 수 없으며 변경 전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이 부착된 제품과 기타 점포설비 등은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미스터피자 상품 이외에 기타 브랜드의 상품에 대하여 브랜드 및 제품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가맹사업과는 별도의 유통경로[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방문판매, CVS, 대형마트, SSM, 인터넷 쇼핑물, 리조트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의 공급가격이나 소비자 판매가격은 해당 유통 업체와의 협의에 따른 프로모션 등으로 인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베민트 커피”을 시작한 날: 2012년 4월 2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8년 11월 14일)

### 2. “베민트 커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엠피케이그룹	마노핀	정우현	1996.9.23. ~ 2010.3.3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32
(주)엠피케이그룹		정우현 이주복	2010.4.1. ~ 2012.7.30.	
(주)엠피케이그룹		정우현	2012.7.31. ~ 2012.8.13.	
(주)엠피케이그룹		정우현 문영주	2012.8.14. ~ 2013.3.25.	
(주)엠피케이그룹		문영주	2013.3.26. ~ 2013.10.30.	
(주)엠피케이그룹		정우현 정순민	2013.10.31. ~ 2015.3.30.	
(주)엠피케이그룹		정순민 황의돈	2015.3.31. ~ 2016.3.30.	
(주)엠피케이그룹		정순민	2016.3.31. ~ 2017.3.30.	
(주)엠피그룹		최병민	2017.3.31. ~ 2017.10.27.	
(주)엠피그룹		이상은	2017.10.27. ~ 2018.05.24.	
(주)엠피그룹		김홍연	2018.05.25. ~ 2020.10.26.	
(주)엠피그룹		양희권	2020.10.26. ~ 2021.3.31.	
(주)엠피그룹		양희권 이종영	2021.3.31. ~ 2021.6.25.	
(주)엠피대산		양희권 이종영	2021.6.26. ~ 2021.8.30.	
(주)엠피대산		이종영 김상욱	2021.8.31. ~ 2022.10.6.	
(주)엠피대산		이종영 김상욱	2022.10.7. ~ 2023.1.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반포동, 한양상가)
(주)엠피대산		임지윤 김상욱	2023.1.4. ~ 2023.4.10.	
(주)디에스이엔		임지윤 김상욱	2023.4.11. ~ 2023.05.16.	
(주)디에스이엔	진형일	2023.05.16. ~ 2023.11.28.		
(주)미스터피자	베민트 커피 (구 마노핀)	진형일	2023.11.28. ~ 현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일부(석수동)

### 3. “베민트 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베민트 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전문점	커피, 디저트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베민트 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2	2		0		
서울	1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1		1	1				
제주									

### 5. 바로 전 3년간 “베민트 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9	-	7	-	-	2
2022	2	-	-	-	-	2
2023	2		2			0

6. “베민트 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베민트 커피”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미스터피자	베민트 커피	20120100153	커피, 머핀	2/1	2/0	0/0
		미스터피자	20080100375	피자, 파스타	214/2	183/1	156/3
		미스터피자 &떡볶이	20214115	떡볶이	-	-	-
		미피샌드	20214116	샌드	-	-	-
계열회사	(주)미스터피자 에프앤비	윙바스킷	자진등록취소	치킨	-	-	-

2023년 현황은 추후 변경등록 할 예정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베민트 커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별 평균 매출액 (단위:천원/년,부가세별도)						비고 (산출대상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년에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없습니다.

### 8. “베민트 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베민트 커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2023년 말 기준 가맹점이 없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 10. 마케팅·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베민트 커피”과 관련하여 마케팅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합계	마케팅, 판촉	연중	-	-	-	
마케팅	온라인 광고 및 브랜드 홍보 외		-	-	-	
판촉	신제품 판촉 활동 외		-	-	-	

2023년 현황은 추후 변경등록 할 예정입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대표전화(고객센터)	전지점 및 온라인 창구	1588-5000

귀하는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맹금 예치 절차를 안내 받아 가맹본부 (주)미스터피자 예금주의 가상계좌에 가맹계약 상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식회사 디에스이엔	2023제감1241	공정거래법	사업활동 방해 (제23조제1항제5호)	2023.8.30.	시정명령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2023제감1241	공정거래법	사업활동 방해 (제23조제1항제5호)	2023.8.30.	과징금 400,000,000원
주식회사 디에스이엔	2023내부1242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제23조제1항제7호)	2023.9.21.	시정명령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2023내부1242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제23조제1항제7호)	2023.9.21.	과징금 528,000,000원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의 시정조치는 당사가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물적분할되기 전 미스터피자 영업표지 사업활동에 대하여 받은 내역입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베민트 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테리어, 간판, 주방시설, 주방기물, 각종매장의 설비와 기타 영업에 필요한 설비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매장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료	가맹본부	예치대상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대상	확정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대상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 1) 가맹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맹료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가맹료 (부가세 포함)	<b>550만원</b>	계약체결일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료를 일할 계산 정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 시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불가사유	반환조건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부가세 없음)	<b>300만원</b>	계약체결일	물품대금 등의 미정산이 있을 경우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가 조각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계약 종료시 반환	계약기간내 채무불이행, 지연이자 등의 상계처리에 도 불구하고 금액을 항상 유지해야함

다. 교육비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교육비 (부가세 포함)	220만원	교육 시작 전	교육이수 중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교육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정산	교육이수 후 반환 불가	

##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가맹금은 아래와 같으나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가맹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맹금을 별도로 예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금액
합계	1,070만원
가맹료 (부가세 포함)	55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 없음)	300만원
교육비 (부가세 포함)	220만원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49.5m <sup>2</sup> 기준 (15평)	82.5m <sup>2</sup> 기준 (25평)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86,690	115,570	4,622~5779			
감리비	가맹본사	2,200	2,200	-	매장 오픈 전	가맹점(매장) 공사 완료 후 반환 불가	

간판, 사인물	협력업체 외 1개사	5,500	5,500	-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1개소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점사업자 자율 또는 협력업체	33,000	55,000	2,200	통상 공사 완료 후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외장,철거, 전기증설, 1차설비, 냉난방, 의탁자 별도
주방기기 (장비등)	가맹점사업자 자율 또는 협력업체 외 3개사	23,100	23,100	-	통상 공사 완료 후 지급	설치 전 계약취소	가맹점 매장 특성에 따라 변경
전산장비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3,200	4,800	-	통상 설치 전 업체 계약 및 지급	개점 전 계약취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공사 등)		19,690	24,970	-	통상 공사 완료 후 지급	공사 전 계약 취소	외장,철거, 전기증설, 1차설비, 냉난방, 의탁자 비용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역 및 물품(품목) 비용 리스트]

당사의 개점 비용은 면적(m<sup>2</sup>)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은 현장 사정(철거공사, 바닥 레벨 작업 여부 등), 사용자재 및 품목의 모델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사업체와의 계약당시 시방서와 계약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점 예상 개점비 내역					
NO	기본공사	49.5 m <sup>2</sup> 기준 (15평)	82.5 m <sup>2</sup> 기준 (25평)	3.3m <sup>2</sup> 당 금액	비고
1	인테리어	33,000	55,000	2,200	
2	간판, 사인물	5,500	5,500	-	간판 1개소 기준
3	주방기기	23,100	23,100		변동 가능
4	전산장비	3,200	4,800	-	POS(1) +키오스크(1)+프린터(1)

				+카드단말기+사인패드 外
소 계		64,800	88,400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NO	별 도 공 사	49.5 m <sup>2</sup> 기준 (15평)	82.5 m <sup>2</sup> 기준 (25평)	3.3m <sup>2</sup> 당 금액	비고
1	소방공사, 배전판 등	3,630	3,630	-	변동 가능
2	전기중설 공사	3,850	3,850	-	변동 가능
3	냉난방기 공사	4,950	4,950	-	변동 가능
4	외장공사	1,210	1,210	-	변동 가능
5	의탁자	2,420	7,700	-	변동 가능
6	기 타	3,630	3,630	-	소모품 外
소 계		19,690	24,970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가맹영업팀 (전화:02-590-9527)	가맹점 창업 희망문의 → 가맹점 사업상담 설명(창업지역, 투자비, 성장성 등) → 담당자 배정 → 창업 가능지역 추천 및 지역조사 → 입점예정지 시장조사(인구, 세대, 발전가능성) → 유사관련업종 영업상태 파악 → 영업성 최적의 입지 선정(비용 감안)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입점 선정 완료

또한, 당사는 상권의 특성에 따라 특수상권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표준매장 과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특수매장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가맹점 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상권이라 함은 리조트 및 레저시설(스키장, 워터파크, 해변휴양지, 스포츠 타운 등 포함)과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대학,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수상권에 개설하는 특수매장은 일반적인 표준매장과는 다른 개설기준(유동인구, 상주인구 기준)으로 검토 진행하므로 가맹희망자의 세심한 판단을 요합니다.

특수매장의 영업구역은 해당 특수상권의 토지 정착물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한

하며 그 외 범위로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특수매장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 이외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지정된 판매상품의 제외를 가맹본부와 협의 할 수 있습니다.

특수매장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전사적 관측행사 및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매장당 총 2명 이상 교육 인원 한도	프랜차이즈사업을 잘 이해하고 가맹사업자 본인이 열성을 다하여 매장영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함
종업원	가맹점사업자와 근로계약 관계자에 한함	만 18세 이상일 것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베민트 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b></p>
---	--

7)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가맹금을 납부일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분납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식자재 비용	가맹본부	매장별 상이	매월 1일~15일 공급분은 당월 22일까지, 매월 16일~말일 공급분은 익월 7일까지 납부	반환 불가		
로열티		月 250,000원	익월 7일까지 전액 일시불로 지급	반환 불가		월단위 청구
교육비			교육 실시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에 대한 연 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 채무의 입금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비용	<b>협력업체</b>	가맹본부 분담비용 제외한 나머지	준공 완료 후 일시불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공사 완료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율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	수수료 전액 분담	월별 정산 시 수수료 제외 후 차액 정산	반환불가		
POS 시스템 유지보수비	가맹본부	S/W 사용비 월 10,000 H/W 유지비 월10,000~25,000 또는 수도권 80,000 지방 100,000	AS 방문 시 청구	반환불가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2023년에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이 없어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외부 사업 관리	담당 슈퍼바이저 매장 식자재 외부 사업 관리	수시	제품기획팀 (02-590-9527)
CS 평가	가맹점 제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위한 Misteri쇼핑 운영 및 컴플레인 발생 평가	Misteri쇼핑 : 연간 2~4회 컴플레인 평가: 상시	품질경영팀 (02-590-9527)
매출액 관리 재고관리 회계처리	POS 및 ERP 시스템 관리/ 당 슈퍼바이저 매장 영업 관리 등	수시	제품기획팀 (02-590-9530)

당사는 가맹점(매장)의 경영지도와 가맹점사업자의 베민트 커피 가맹사업 시스템(이하 “BCS”)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수시로 슈퍼바이저 또는 당사의 위임을 받은 자를 파견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직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을 방문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주방, 홀, 기타 장소의 확인과 식자재 재고 확인, 각종 서류(매장 회계, 노무 및 위생 관련 서류 등) 및 기자재 일체 등의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매출증대 및 매장 운영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상담 요청에 대해 당사는 성실히 응하며, 당사는 매장 영업과 관련된 회계장부를 열람 및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베민트 커피” 가맹사업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제 3자(양수인)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및 독점적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소멸할 경우, 당사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해결·처리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가맹사업 운영에 장애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장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경에 관하여 문서로 된 사전 승인을 당사로부터 득하여야 합니다.

양도를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당사에 “양도양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인에 대한 필요한 모든 내역을 당사에 제시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

일 당사가 본 계약의 양수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에 의해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 하며,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인정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임의로 양도양수를 하였을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명의변경과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명의변경자와 영업양수인은 완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변경자와 영업양수인은 가맹계약 제6조의 가맹료, 계약이행보증금(단, 계약이행보증금이 당사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된다),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변경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가맹료는 면제되며, 이 때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BCS(Bemind Coffee System)에 의한 모든 권리는 소멸되며, 매장 내의 집기 비품 등 당사의 로고가 사용된 모든 내용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종료일까지 간판 등 당사의 로고가 부착된 각종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 또는 방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직접 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BCS에 관한 모든 사양의 명세서 및 운영 매뉴얼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소유하는 시설, 비품, 기기, 판매촉진용품, 포장재, 원재료 등 모든 물품의 처분은 소유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책임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 및 당사의 협력업체 소유의 모든 임대 집기류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 폐업신고,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안내용으로 가입했던 전화가입권 변경 등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위 사항이 이행되었음이 확인될 때까지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BCS에 관한 기술, 상품, 기타 당사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외부에 일체 제공,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 활동에 일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가맹점사업자가 “베민트 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b></p>
--	--

※ 설비 및 원,부재료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b></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에 공급한 품목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베민트 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베민트 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베민트 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베민트 아메리카노	왼쪽에 기재된 판매 상품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계약갱신거절통보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카페라떼		
카푸치노		
마닐라라떼		
헤이즐넛라떼		
카라멜마끼아또		
카페모카		
돌체라떼		
흑당라떼		
달고나라떼		
아*샷*추(아이스티 샷 추가)		
오곡라떼		
고구마라떼		
초코라떼		
블랙티라떼(밀크티)		
딸기라떼		
오트밀라떼		
제주20말차라떼(그린티라떼)		
자몽에이드		
레몬에이드		
유자에이드		
청포도에이드		
복숭아아이스티		
레몬아이스티		
오렌지주스		
페퍼민트_티		
캐모마일_티		

로즈마리_티
얼그레이티
그린_티
유자차
레몬차
캐모마일유자차
딸기 스무디
망고 스무디
플레인요거트 스무디
딸기요거트 스무디
망고요거트 스무디
컵떡볶이(달콤)
컵떡볶이(매콤)
베민트 오리지널 크림 와플
베민트 카라멜 와플
베민트 누텔라 와플
베민트 후당 와플
크렌베리 쿠키
초코 피칸 쿠키
비스코프 스모어 쿠키
오레오 스모어 쿠키
해바라기 씨앗 호떡
딸기 마카롱
레몬 마카롱
바닐라 마카롱
크림치즈 마카롱
피스타치오 마카롱
라즈베리마카롱
초코 마카롱
에그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
에그 햄 치즈 샌드위치
더블 에그 샌드위치
베민트 달고나 와플

※ 가맹본사가 지정하는 상품, 용역의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및조건	위반시책임	비고
만19세미만 (미성년자)	주류 (맥주,와인등)	관련법규에 따라 판매금지	1회위반:구두경고 2회위반:서면시정요구및 계약갱신거절통보 3회이상위반:계약해지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이외에 당사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판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기 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형사 고발 될 수도 있으니 절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V. 3. 1)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에 의한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가 지정한 제품 및 권장 가격에 따라 영업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체 판단으로 제품 가격의 임의 변경, 특정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자체 메뉴를 개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매장위치 또는 주 고객층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와 가격을 달리 구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서면으로 메뉴 변경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변경 가능한 항목, 가격 및 일정 또는 변경 불가 의견이 기록된 결과를 문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한적으로 허락한 한도(품목, 가격 및 일정) 내에서만 변경 영업을 가능합니다.

##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가맹본부)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계열회사)
커피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베민트 커피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p>① 점포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반경 200m를 원칙으로 함(상권의 특징에 따라 조정 가능)</p> <p>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스키장, 워터파크, 해변휴양지, 스포츠타운,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대학,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p> <p>③ 특수상권의 영업구역은 해당 특수상권의 토지 정착물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됨</p>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최초 계약시 형성되어 있는(준공 이전 사업계획완료도 포함)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대학교 등 각종 학교 내 관공서, 병원 등의 대형건물의 영업지역(특수상권)은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 또는 직영점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위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베민트 커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베민트 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베민트 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매장·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당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당사가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거절 통지를 아니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
○ 물품대금, 로열티 등 가맹금 납입 기일을 지연하는 경우	
○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원, 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하여 영업하는 경우	
○ 당사가 제공하는 장비, POS시스템, 상품, 유니폼, 간판 및 매장 내외부 홍보물, 전단지 등 기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매뉴얼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음식 제조 매뉴얼(RECIPE)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 당사가 요구하는 매출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사가 정한 위생기준, 위생업체 이용 등 위생관련 규정을 무단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영업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임의 폐점하는 경우	
○ 고객이 합리적인 이유로 제기하는 불만사항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그 시정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게을리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 당사가 진행하는 전사적인 마케팅 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당사 제품의 메뉴 및 권장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 당사가 공급하는 원, 부재료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임의제공 등을 하는 경우 등	
○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상품권이나 시식권 등을 발행하거나 유통시킨 경우	
○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 기타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 이 해 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0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0조 제2항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동의하에 가맹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부서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양도를 희망할 경우 서면으로 당사에 “양도양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인에 대한 필요한 모든 내역을 당사에 제시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당사가 양수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에 의해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인정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임의로 양도양수를 하였을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베민트 커피”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사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일 것	양도희망자가 양도양수신청서 제출 → 당사 담당 부서 검토(양도·양수인 면담 포함) → 연수교육 시행 → 최종면담 →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 →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양수계약 체결 → 양수인 당사와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영업팀 (02-590-9527)

가맹점사업자가 “베민트 커피”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양도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매장)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권리금(영업, 바닥, 시설 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맹점운영권 일부를 상속하거나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현재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및 위탁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의 통지	권리의무전부 (일부 불가)	서면신청(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서류 첨부) → 당사 확인 절차 → 승인 → 맹계약서 및 가맹점사업자 명의변경 → 상속완료 (소요기간: 약 30일)	교육실시할 경우 별도의 교육비 발생
대리행사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베민트 커피"와 경합하는 동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본 계약의 체결 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위해 온 사업 등 계약 체결 전에 당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점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중 베민트 커피 고유 매뉴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영업	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경업 허가 신청 → 당사 담당부서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 완료	문의: 제품기획팀 (02-590-9527)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고유의 레시피 등 매장 운영 매뉴얼을 이용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베민트 커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3:00 (16시간)	연중무휴	문의: 제품기획팀 (02-590-95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강제사항 아님 (매장 자율)	강제사항 아님	가족, 친구, 지인 등 무관함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위생/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매장평가 리스트(청결 부분)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2회/월 (필요시 수시 점검)	제품기획팀 (02-590-9527)	
서비스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친절도 확인 → 매장평가 리스트(친절도 부분)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2회/월 (필요시 수시 점검)	제품기획팀 (02-590-9527)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매장평가 리스트(품질부분)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2회/월 (필요시 수시 점검)	제품기획팀 (02-590-9527)	

당사는 훌륭한 품질, 서비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장평가계획서와 시정확인서 등 매장 평가 제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매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 매장 평가 제도

당사는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와 매장의 매출 극대화,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브랜드 이미지 고취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위탁 업체 등은 품질, 서비스, 청결 및 위생, 브랜드 이미지 4개 항목 외 미생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에 대한 정기적인 매장 평가를 실시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위 평가에 필히 응하여야 하고, 당사는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시정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매장 평가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며, 당사는 매장 평가와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안내 책자를 매장 평가 진행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포상, 벌칙 기준

매장 평가 관련 포상, 벌칙 기준은 가맹계약서 및 가맹본부 방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 9. 마케팅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베민트 커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전국 단위의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 마케팅 및 판촉 활동에 대한 비용의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가맹본부/가맹점 부담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홍보, 상품광고 등	분담율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후 시행	가맹점사업자와 마케팅, 판촉 및 전략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진행	
판촉 행사	판매촉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당사는 기업이미지 광고와 상품 광고를 총괄하며, 창작 내용과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광고시행, 배분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전 가맹점(매장)의 통일화, 고객만족 및 매출증대 등의 목적으로 전사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매출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비율로 구성된 마케팅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마케팅,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비용에 의한 지역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가맹점사업자는 그 행사의 목적, 내용(제휴 업체, 행사 대상 등 일체) 및 홍보물(간판, 전단지, 벽보, 공중매체 선전물, 명함, 광고 문언, 지하철, 아파트 등의 부착물 등 홍보물 일체)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홍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절 차	담당부서
독자적 마케팅·관측 활동시	가맹점사업자 마케팅 및 관측 활동계획 → 각 가맹점별 담당 코치(가맹점 관리 담당자)와 협의 → 지정업체(디자인, 홍보물 제작업체 등) 비용의뢰 및 검토 → 가맹본부 최종 승인 → 최종 가맹점사업자 독자적 마케팅 및 관측활동 진행	제품기획팀 (02-590-9527)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종업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은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관계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를 타에 유용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 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집니다.

귀하가 임의 폐업·영업 중단·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그 외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운영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따른 소요기간 및 금액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구분 합계	해 당 업 무	담당부서	소요기간	소요비용
			60일내외	
1	가맹점 창업 희망 문의	가맹영업팀 및 제품기획팀	D-62~60	IV. 1. 참조
2	가맹점사업 상담설명			
3	창업지역, 투자비, 성장성 등			
4	희망지역 시장조사			
5	창업 의사결정 및 최종협의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포함], 가맹계약서 제공)			
6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인사교육팀	D-47~45	
7	이론 및 실습교육 신청			
8	신규 매장정보 각 부서 전달 업무참조			
9	이론 및 실습교육 시작	제품기획팀	D-45~40	인테리어, 간판 공사비 계약금 30%
10	점포인테리어, 사인물 실측			
11	점포 철거 및 재실측			
12	매장도면 협의 및 확정			
13	실내외 공사 착수			
14	추가공사 관련 협의	D-35~20		
15	철거, 에어컨, 모니터 등			
16	공사 진행 전반 체크			
17	영업신고사항 안내	제품기획팀	D-20~19	
18	발급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 배포			

19	오픈, 전단, 관측물 행사 협의			
20	매장기기입고, 설치 - 주방장비	제품기획팀	D-13~11	인테리어, 간판 공사비 등 잔금 70%
22	매장 POS 설치 및 작동상태 체크	전산팀		
23	본사기물 발주 및 입고	제품기획팀	D-11~6	
24	- 식자재, 주방, 액자 등			
25	공사완료 체크			D-5
26	매장장비 점검 및 카드 승인	제품기획팀	D-5~1	
27	오픈 전 매장 현장교육 및 관측			
28	오픈 완료			OPEN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해석 또는 가맹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에 따르기로 합니다.

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li> <li>(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li> <li>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li> <li>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li>상기 절차는 별도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li> </ul>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제품기획팀 (02-590-9527)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제품기획팀 (02-590-9527)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베민트 커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베민트 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별도의 경영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베민트 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서비스, 매장운영 전반교육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오픈 전까지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교육	실습/이론교육	신메뉴 출시 7일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서비스, 위생, 품질 등	실습/이론교육	수시	필수 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베민트 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약 2주	220만원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필요시 사전 동의 후 진행	필수적으로 이수

위 신규 교육비용은 매장운영 전반에 걸친 노하우 전수 교육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마인드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또는 매장의 점(부점)장급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계약, 영업의 양도 양수 및 재계약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가맹 계약에 의하여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니다. 단, 당사가 시행하는 소정의 검증절차에서 합격으로 인정되어야 그 교육이 이수된 것으로 합니다.

교육기간은 신규 계약 및 양도양수인 경우 최소 약 12 ~ 15일 이상으로 하되 당사가 시행하는 소정의 검증절차에서 합격으로 인정되어야 그 교육이 이수된 것으로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교육 훈련 중도 포기, 교육 훈련 불합격 등 포함)에는 가맹희망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고, 최소 3일 이상의 연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단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교육을 이수하고 매장을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보수 교육 프로그램(신제품, 매장관리 및 서비스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일자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가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3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또는 코치를 통해 구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합리적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내용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지원팀(02-590-957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 (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mailto: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mrpizza.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